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8,074,067	12,242,222
일반회계		373,991,404	11,219,742
특별회계		34,082,663	1,022,480
	기타특별회계	34,082,663	1,022,480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239,928	67,198
	섬진강댐특별회계	7,733,913	232,017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976,000	29,280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7,459,419	223,78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2,814	13,584
	기반시설특별회계	81,013	2,4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101,161	423,03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8,415	31,152

제 2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654,028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